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5279248(본소), 2022가단5346056(반소) 판결
[청구이의 ·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나18798(본소), 2023나18804(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5279248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문기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변론종결 2022. 12. 8.

판결선고 2023. 3. 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806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9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12. 20. 소외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연 13.5%, 변제기 2007. 12. 20.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위 D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위 D이 대여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2008. 2. 20. 원고와 위 D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라 이 법원 2008가단428063호 대여금사건으로 진행되어 2009. 5. 27.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을 얻었으며, 위 판결은 2009. 7. 11.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6. 14. 서울회생법원 2016회단3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25.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관리인으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5) 서울회생법원은 2016. 3.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고, 2017. 5. 29.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 7 내지 9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제152조 등에 따라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그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 회생채권자인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19. 서울회생법원 2007개회 46117호로 개인회생신청(이하 ‘이 사건 1차 개인회생’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07. 12. 26. 회생을 통해 변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의 확인서(을제1호증의 2)를 피고에게 보내 피고의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후 2008. 3. 7.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됨에 따라 2008. 8. 4.부터 2010. 8. 6.까지 피고에게 9,843,940원을 변제하였지만, 이후 변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1차 개인회생은 2010. 10. 7. 폐지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6. 30. 서울회생 2014개회129591호로 하는 개인회생(이하 ‘이 사건 2차 개인회생’이라고 한다)을 신청접수 하였고 2014. 10. 27. 개시결정이 되었으나, 2014. 11. 21. 폐지되었는데, 이 사건 2차 개인회생에서 원고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1차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것으로 보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건 1차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때로부터 약 6년여가 지난 후에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함으로써 특별히 얻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반소 청구로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실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거나 이 사건 집행권원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이 실권되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게 되어 실권된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됨으로써 실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권된 이 사건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